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97 호
----------	--------

제출년월일 : 2003. 11.
제 출 자 : 예산군수

□ 제안이유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광주민주화운동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되도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건의를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예산군세감면조례도 동일사안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함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으로 개정 (안 제2조 제2항)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 확대 (안 제2조제2항)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9조(과세 면제등을 위한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자료
 - 충청남도 세정13415-1264(2003. 7. 24) 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통보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으로 하고,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생 략)</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영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4. (생 략)</p> <p>③ (생 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p> <p>1.~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